

瑞山市中小企業經營安定基金設置 및 運用條例案  
檢 討 報 報 書

1.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2. 提出日字 : 1997. 9. 12

3. 提案理由

지역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목적 규정을 둠(안 제1조).
-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읍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 보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기금은 중소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 운전자금 및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에 소재한 자로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 규정을 둠(안 제7조).

- 융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융자 대상자를 심의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융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장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 5. 制定根據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43조 제1호

## 6. 檢討意見

- 본조례의 제정배경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자금사정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촉진하며,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 주요골자: 중소기업안정기금설치 목적 규정을 두고 기금 관리운용 등을 시장이 관리토록 하되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위탁관리.운용토록 했으며, 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하고, 이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점이라 하겠으며, 조례 제정함으로써 관련법규에抵触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제정안 제13조4항1호의 상임위원회 「의원1인」을 「위원중1인」으로 하고, 동항 5호 서산상공회의 「소장」을 「회장」으로, 동항 6호 「충청은행지집장」을 「충청은행 서산지집장」으로,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 서산시 「지집장」을 「지부장」으로, 제13조5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조례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임」기간으로, 제18조2항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수정해야 될것으로 사료됨.